

「계좌간자동이체」약관

제 1 조 자동이체 방법

- ① 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 (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을 입금 계좌로 이체합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18시 전 입금분에 한해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 ②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다만, 정기예금 및 신탁 월지급 이자는 그전 영업일에 이체합니다.
- ③ 통장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이체합니다. 다만, 고객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잔액 이내에서만 이체 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지급자금 부족 때의 처리

-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합니다. 다만, 이체주기를 매 영업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 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도 이체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금계좌가 대출계좌, 집합투자기구(펀드),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여러 건의 이체처리

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4 조 증권의 부도

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

제 5 조 신청내용의 변경, 해지신고

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체지정일 전 영업일까지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6 조 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 때 처리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 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합니다.

제 7 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5개월 연속 미이체 시 SMS로 통지하며 6개월이상 이체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입금계좌가 퇴직연금인 경우 6개월이상 이체되지 않더라도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 8 조 외화계좌 자동이체 적용화율

- ① 원화계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처리일 이체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 ② 제 1 항의 원화계좌는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을 말하여, 외화계좌는 외화예금, 외화로 거래하는 집합투자 기구(펀드) 또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 계좌를 말합니다.

제 9 조 집합투자기구(펀드) 자동이체 처리

- ① 입금계좌가 집합투자기구(펀드) 계좌인 경우 지정일에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 후, 집합투자기구(펀드)별 규약에서 정한 판매가격(매입기준가격)적용일에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다만, 외국집합투자기구(역외펀드)에 투자하기 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입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자동이체 처리가 불가합니다.
- ③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가 지급계좌일 경우에는 이체금액을 별도로 신탁계정에 예치하지 않고 이체금 액만큼 지급정지되며, 각각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매입기준가격 적용일에 출금하여 입금계좌로 이체합니다.

제 10 조 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

- ①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당일 중 지정된 대출계좌로 이체합니다.
- ② 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할 경우 약정납입일 전일까지는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 이체됩니다. 다만, 약정납입일 부터는 영업시간 마감 이후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 일시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 이내에서 약정이자를 일단위로 이체합니다.
 - 2. 분할상환은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1 천원 이상일 경우 할부금을 원단위로 이체합니다.
 - 3. 제 1호 및 제 2호에도 불구하고 협약대출, 정책자금, 파생연계상품 등은 제 2조 본문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③ 납부할 할부금의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연체기준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 11 조 퇴직연금 자동이체 처리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출금가능금액이 이체금액에 부족한 경우 이체지정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됩니다.

제 12 조 계좌이동서비스

- ① 계좌간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u>www.payinfo.or.kr</u>)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거래처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 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거래처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mark>다른 금융기관</mark>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⑤ 거래처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중인 자동이체는 해지처리 됩니다.

제 13 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따릅니다.

제 14 조 준용

- ① 계좌간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제9조 집합투자기구(펀드) 자동이체 처리는 2010년 9월 13일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제10조 대출계좌 자동이체 처리는 2011년 1월 7일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제7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처리는 2020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제12조 계좌이동서비스 처리는 2020년 5월 26일 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

1. 영업개시전 : 정기예금 이자지급

2. 영업시간중 : 타행자동이체, 대출이자, 신탁, 요구불이체, 선일자 등

영업점 직접처리분

3. 영업시간후 : 다음 그룹 순서에 의해 처리되며, 그룹내 처리 순서는 없음.

- 1 그룹: 대출이자, KB 카드대금, 영업점 개별 처리건(APT 관리비 등)

- 2 그룹: 대외청구자금(VAN, CMS, GIRO 등)

- 3 그룹 : 기타 수신 계좌이체, 적립식 예금이체(신탁포함), 요구불간 이체 등

※ 납부자자동이체 :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